

미야기현으로부터의 중요한 알림

# 외출 자제 요청에 대해서

기간: 2021년 1월 9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

특별조치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하여 현민에 대해 **특정 도도부현(※)으로의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이동은 피하도록** 부탁드립니다.

**특정 도도부현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현지의 감염 상황을 근거로 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도록** 부탁드립니다.

※특정 도도부현(긴급사태 선언 대상 구역에 속하는 도도부현)

2021년 1월 8일 시점 : 사이타마현, 지바현, 도쿄도, 가나가와현

2021년 1월 14일 시점 : 도치기 현, 사이타마 현, 치바 현, 도쿄 도, 가나가와 현, 기후 현, 아이치 현, 교토 부, 오사카 부, 효고 현, 후쿠오카 현